

## 인권교육의 재정립과 실천방향 모색\*

이 재 호\*\*

I. 서론	V. 결론
II. 인권교육의 개념	<참고문헌>
III. 인권교육의 재정립	<국문요약>
IV. 인권교육의 실천방향 모색	

### I. 서론

한국은 국가건설 이후 늘 인간주의와 자기문화 주체성과 정체성의 결여로 인해 여러 가지의 시대적 과제를 ‘한꺼번에’ 풀어야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산업화, 민주화, 다원화, 세계화, 정보화 등은 ‘현재’의 과제인 ‘동시에’ 과거나 미래의 과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1987년대 이후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 각 부분의 참여의식 강화와 그로 인한 각 참여 관계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여러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세기는 인권의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왔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권에 대한 연구는 철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인성교육의 부재와 지식교육의 일방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소통과

연대, 평등 그리고 인권 등의 인간주의를 위한 시민성 형성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인권의식과 실천이 박약하다면 어떠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도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인권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분야별 인권교육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현재의 제도·법령·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권교육 제도화가 요구되는 영역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여,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한 것이다.

본 논문은 현대 인권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민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조성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민주화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물론 인권과 인권교육이 그 혼돈과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시민의 기본권보다 근원적인 인권이 시민사회 구성에 중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심각한 사회구성체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반영하는 인권교육도 교육이기에 인권교육은 현재의 한국교육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한국사회의 현재성은 인권의 획득과 이를 신장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 활동은 한국사회에서 약자나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되는 면을 드러내고,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제도(공식)교육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이 안고 있는 실천과 과제들을 철학적·학문적 배경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글은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간의 변증법적인 조화를 위한 인권옹호적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인권교육에 대한 실천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권교육은 맹목적인 비판의 대상이었던 집단주의와 미성숙한 개체성을 완성시키고 취약한 사회적 관계의 강화를 통하여 신뢰성과 사회적 기구 운영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는 차원 높은 사회구성과 구조화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의 개념과 개념의 변천사를 통해 “인권교육 내용의 기준틀”을 토대로 현재 인권교육의 체계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5-B00003).

\*\*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연구교수, 정치사상 전공(millthee@naver.com).

및 현황을 알아본다. 둘째, 정치경제적인 구조와 상황의 변모, 이에 따른 사회관계적 체계의 전환과 문화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인권교육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권교육의 목표에 따르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로 나누어 살펴본다. 셋째, 지금까지의 인지능력 중심의 인권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권교육의 실천 방향을 인성과 학교 및 시민교육의 토대를 통해서 문화민주주의와 정치경제적 조건의 질적 전환을 통해서 실천대안인 인권영향평가제와 인권교육위원회를 제기한다. 그래서 본 논문은 기존 인권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변화와 더불어 변화를 가져와야 할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실천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인권교육의 장애요인을 해결하여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인권교육의 개념

### 1. 인권과 인권교육의 의미

모든 인간은 천부인권이 아닌 생득적으로 갖는 ‘권리를 알 권리’가 있다. 즉 인권은 권리를 아는 자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모든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토대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교육은 그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우선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적고 있다. 이는 인권이 시민적인 존재로서의 권리가 아닌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본성에 주어진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인간이 출생과 동시에 그가 갖는 힘의 원천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획득을 위한 운동과 투쟁이 필요한 권리와 인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는 인권문제의 발생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시장중심주의로 인한 자본중심의 이윤 획득 과정에서 인권개념이 시장지배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문제이다. 둘째, 국가가 제반 국가 권력을 독점적

지배를 위한 국가기구의 운영에서 권위주의적이고 위임민주주의를 이용한 지배권의 장악에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집단과 개인 등 포괄적 관계에서의 편견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적 억압이다. 즉 오늘날 인권문제는 그가 처한 위치의 소속에 의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인권과 인권교육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문화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선행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인권의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존엄성과 권리를 부여하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문명으로부터 서로 다른 사상을 종합하여 구성한 것이다. 세계의 여러 문화와 문명은 같은 역사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각각의 이념과 철학은 독특한 진화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각 문화에서 인간 존재의 도덕적 성격을 규정하는데 기초로 삼은 기본 원리는 모두 지리적·문화적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성격을 가졌다.<sup>1)</sup>

인권교육이 주체성과 정체성을 위한 것이라면 선행적인 극복대상은 서구중심적인 관점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관점의 인식과 실천이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한국인의 역사적 경험이 서양인들의 그것과 같지 않다면, 그 차이가 큰 만큼 역사의식도 크게 달라질 것이며, 자기이해 방식 역시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서구적 보편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지적 식민지성의 굴레를 넘어서 수 없기에 우리의 보편성을 적극 발견하고 우리의 특수성을 보편화하는 보편적 독해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어떤 이론이나 접근이 현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명하는가를 묻기보다 그것이 지배의 취약성을 여하히 조망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인권교육에 대한 한국사회의 일반성은 잘못된 자유중심주의와 시장중심주의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잔존하고 있다. 결국 인권교육과 인권의식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먼저 ‘자기 권리 찾기’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 권리 존중하기’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는다.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 자기화는 개체의 실현, 국가의 발전, 세계의 화합이란 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인권이 단순히 정치적 상황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가정, 일터와 같은 일상생활의 장에서도 인식

1) Dandan, Virginia B., “인권교육에 대한 대안적 접근,” <http://www.rights.or.kr/html/rights040001.html?num=121&new>.

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인권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또 국가와 사회의 발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의 자기화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 2. 인권교육의 실천 프로그램

구조기능이론에 입각한 근대적인 인권교육은 사회구조의 영향 속에서 행위 주체를 규명하고 이론화하기보다 행위주체를 종속변수로 가정한 상태에서 정치적 사회화를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화 개념을 통해 개인이 사회적 행위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형성을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로 가정하고, 주체가 사유에 의해 사회화 내용들을 내면화할 수 있는 독립적 존재임을 강조할 뿐이다. 이러한 이론이 갖는 장점은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의식적 주체가 사회적 규범·가치·지식·역할들을 순수하게 학습하는 사회화 과정으로서 교육의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대다수의 인권교육의 범주에 해당하는 방법론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와 교육적 현실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생산하는 의식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상호작용성과 갈등이론을 배제한 주체의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보다는, 주체가 기존 사회질서에 통합되어 가는 피동성만을 나타낼 수 있다.

인권교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학습기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개념분석기법이다. 개체성을 인지하고 사회적 관계의 형성·유지를 위한 사회적 개념들을 습득해가는 기법이다. 둘째, 가치명료화 기법이다. 인간은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으로 상이함을 통해 가치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셋째, 역할놀이 기법이다.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공감적인 정서는 인권침해나 유린이 되는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감정이입함으로써 자신도 언젠가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는 것이다. 넷째, 집단적 탐구 기법이다. 이는 경험주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의 문제에 대한 협동과정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인성적 기법이다. 인성적 기법은 특정한 가치와 태도를 주입식으로 교육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느끼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성과 자율성을 갖추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sup>3)</sup>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공감 능력 기르기,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 및 실천능력 기르기, 인권교육환경 만들기 과정이며, 구체적으로 인권태도 발달 및 정서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일반적인 인권교육에는 인지지향과 행위지향의 방법으로 축약될 수 있다.

인권교육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자신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권에 대해 배우려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인권교육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인권교육에서는 주변의 인권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인권문제에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차적으로 인권의 간접 경험은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친화적 행위성향을 갖도록 자극할 수 있다. 사회의 안정성은 구성원간의 신뢰와 사회제도의 제도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제반 사회가치에 대해 대다수가 합의를 한 이후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때이다. 그래서 사회적 행위가 관례화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사회는 구성원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동조의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회적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 방식이나 기존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인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목과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런 성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난을 받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sup>4)</sup>

인권교육에 사용되는 흔히 가치·태도론적 입장인 행위성향은 사회적 행위와 규칙을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습득된 경향성을 말한다. 행위성향을 습득시킨다

3) 유네스코한국위원회(편),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오름, 1997), 43쪽.

4) 박상준, 『행위성향중심의 시민교육』,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2), 94쪽.

2) 이명준(외),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3쪽.

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규칙에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반면에 전문적인 인권교육은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에 따라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통해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법이나 인권선언 내용의 교육 수준을 넘어서는 인지적 능력의 발달을 취급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인권적 행동이 동기화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인권원리가 인지정서에 의해 활성화되어야 한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추상적인 원리만 있다면 행동은 뒤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3. 형식교육

공식적인 교육체계라 할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체계를 말한다. 형식교육은 체제의 갈등처리 이후의 점진적인 변화와 인권의 보편성을 체계화시킨 교과구성과 교육계획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형식교육은 인권의 제반 영역에 대해서 실천과 보호를 위한 유엔과 유엔산하기구인 국제앰네스티, 유네스코, 비정부기구인 아시아인권위원회,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세계고문철폐기구, 학교교육, 행정 및 기타 공공영역에서 실행되는 공식적인 교육체계라 할 수 있다. 인권교육의 주요 행위자는 국가인권위원회라 할 수 있는데, 2001년 이후 국가행동 개발, 정규 교육 체계에 인권교과과정을 도입 또는 강화, 인권 정보화 캠페인의 주도과 인권자원·정보·훈련장에 대한 대중의 접근 개방, 자발적인 기금과 국제·국가 인권교육 계획에 대한 기부자 지원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는 교육·교육방법론·인권교육에 오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유네스코 학교·클럽·인권강좌, 국가위원회를 통해 행동 계획들을 구상·이행·평가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인권교육은 인권을 옹호하는 행위를 목표로 포함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과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인권옹호 행위에 선행하는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즉, 인권옹호 행위는 인권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이해)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한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능력 중심의 인권교육은 인지 발달론적 관점에서 인권옹호 행

위의 실천보다는 인권에 대한 지식과 비판적인 사고능력의 발달을 인권교육의 목표로 강조했다.<sup>5)</sup> 여기서 비판적 사고란 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모두를 포괄하면서도 이들이 배제하거나 다루지 않는 추론의 방법 또는 내용을 다룬다. 그러나 인권교육에서 인지능력의 발달은 복잡해지는 인권개념과 상황에 따른 판단의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사실에서 고도의 판단능력이 요구되어진다는 점에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 4. 비형식교육

인권은 전체적인 경우보다 개별적이거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약자의 자유권 및 문화권과 관련되는 경우가 더욱 많다. 그래서 인권교육이 사회적 약자 집단에게 급선무이며, 따라서 정규교육이 아닌 민간기구 등에 의한 비형식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효과와 효율성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난민, 소수자, 이주노동자, 빈민 등은 가장 힘없고 권리침해에 취약하다. 이들은 개별성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킨다는 의미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양으로서의 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과 학습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학습의 질을 강조하는 학교와 비공식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과 실천중심의 교육체계를 비공식(비정부) 교육이라 한다. 이는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인권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자유와 평화의 공간이다. 우리의 경우 인권교육은 비공식적인 기구와 단체에 의해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권의 현재성이 표현되고 있다. 자유권과 사회권에서 문화권에 이르기까지 제3의 영역인 시민사회기구들(대표적으로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대학부설연구소 등)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사회적 환경감시기능을 수행하면서 제한되었던 인권이 실천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더불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역량모델과

5) 박상준,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35권 1호(한국사회과학교육학회, 2003), 120쪽.

효과, 그리고 평가지표 등을 위해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통합이 요구된다.

### III. 인권교육의 재정립

#### 1. 인권교육개념과 과정

인권을 배우고 행한다는 것은 문자를 읽고 쓰는 법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방식, 곧 나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성이 아닌 다른 사람의 권리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동시에 체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인권은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될 뿐, 다른 어떤 목적으로는 제한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권과 인권교육의 실천에 가장 공세적인 신자유주의는 이른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지만, 인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구조적 원인을 다루지 않고, 기존의 사회권적 규범을 반복하는 기득권 유지라는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정보화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인권의식과 실천이 곧 인간주의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권이 지역과 시간 그리고 문화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 인권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날 인간에게 문화는 그 자체가 정체성의 표현이자 삶의 방식이므로 문화와 인권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의 의의가 자국의 범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어 한 나라의 문화가 져야하는 책임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자아와 타자의 승인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집단의 가치와 권리에도 동일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인권은 원리적으로 현재 사회 구조의 반인권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개념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 인권이 실현되는 상황은 특정한 사회제도 및 구조, 문화 등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 개념은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제도, 문화 등을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즉 인권 개념은 우리 사회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판해 나가는 개념이다.<sup>6)</sup> 사회이익이 날로 파편화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민중에게 구체적 혜택을 주는 특정 정책을 찾기 힘들고 상충되는 이익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제도 틀 또한 고안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는 무기력한 민중은 정부 및 정치권의 이익조정 행위에 관용적 태도를 보이고 수용·실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이익에 대한 ‘무임승차자’가 등장하게 되고, 공동체 이익과는 상반되는 행위일지라도 사회갈등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분출되지 않고 정치체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다. 이를 교정하는 가치와 제도적인 틀로서 인권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원주의와 민주주의가 원만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인권교육은 단순 지식전달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첫째,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인권이 갖는 권리의 목록과 내용 및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유형과 파괴적 결과를 내면화해야 하며, 둘째, ‘인권을 위한 교육’은 일상적 삶을 인권의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셋째,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과정은 교육의 주체와 객체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경청되는 과정이어야 하고, 학습자들의 동등한 참여와 기여가 보장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의 차이가 존중되는 과정이어야 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필연적으로 폭력적 문화와 비민주적 의사결정체계, 억압적 규율과 교수방법을 재구조화해야 한다.<sup>7)</sup>

6) 한국교육연구소,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2005년도 인권교육개념모색 연구용역 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2005), 36쪽.

7)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민간단체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2000, 20쪽.

## 2. 인권교육의 맥락성과 현장성

인권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이 처한 그들의 일상생활의 불공정에 대한 인지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들과 함께 인권 과제를 선택했을 때, 학습자들에게 인권의 의미가 있다면, 이러한 인권 과제는 적으나마 그들이 처한 불공정을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인권의 인식과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의 현장성과 실제성이다. 실제로 개인과 집단의 현재적 위치에 그들이 처해 있는 제도와 문화, 그리고 의식을 반영해야 한다. 즉 현지화와 맞춤형 설계가 동반되어야 한다. 인권 친화적 현실 참여란 현실 사회 속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 노력과 인권 친화적 행동에 관련된 영역이다. 인권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인권의식을 가지고 인권 친화적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참여적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은 첫째, 인권교육의 과정은 철저하게 참여적 학습의 과정이어야 한다. 인권교육의 과정은 수동적 지식 전달이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 과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문제를 둘러싼 집단 활동에 참여는 문제를 보다 전체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개인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둘째, 현장체험 학습 중심적인 인권교육이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방법이다. 셋째,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교육에서 참여는 수업 시간에 만의 참여가 아닌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및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할 것이 요청된다.<sup>8)</sup>

인권교육은 사회 각 영역 간의 분리와 배척이 아닌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에 의한 체계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 사회, 한 시대의 교육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맥락을 정확히 독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과 실천은 우리의 맥락과 무관한, 우리의 도덕문제와 무관한, 학습자와의 공유되지 않은 객관적 상징

체계만을 그대로 따온다면 그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 3. 참여적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

산업사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인권과 시민교육은 자기주도성의 성격을 상황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행위자의 이성을 맹신하는 합리주의, 또는 인지적 능력이 여타의 능력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인지능력의 함양이 인권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지주의가 범하는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탈산업사회에서 제1의 덕성은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성’이다. 인간은 자기의 실존과 조응하는 세계의 질서에 대하여 최소한의 자율적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인권에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의 의무’와 반인권적인 법과 제도에 대한 불복종과 저항으로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덧붙여 개인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도 분명히 해야 한다. 참여 중심적 인권교육은 지식 또는 상식의 전달에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셈이다.

진정한 인권교육은 현장 참여와 결합되어야만 그 의미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실험, 실천이 결합된 교육방법을 창조해야 한다. 여기에서 참여가 ‘아래로부터 위로’의 행동만이 참여라면 곧 소외로부터 벗어난 사회적 정체성의 획득을 의미하며 그 자체가 자아실현의 통로가 되며, 실제 참여과정을 통하여 참여자의 자기개발이 이루어진다. 또한 참여는 사회구성원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그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면 참여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다. 또한 민주사회에서 정당성에 대한 참여의 가치는 사회적 일체감의 증대와 함께 정통성의 확보를 강조하였고 사회적 안정의 초석이 된다면 참여는 ‘강한 민주주의’를 낳는 것이다.

오늘날의 지배집단은 사회문제에 대해서 우월한 경제력, 대중매체에 대한 통제, 권력, 정치적 합법성의 지위를 이용하고 왜곡하여 ‘피지배집단의 이익’을 호도하는데, 지배집단의 이익을 전체 이익으로 규정하는 헤게모니 지배를 배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자본은 사람들의 은행계좌에 들어 있고, 인적 자본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으며,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의 관계 구조 속에 있

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개념 및 방향정립 모색 연구”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2006), 6-8쪽.

다)면 한국사회의 가장 큰 단점은 오랜 군사문화로 인해 위계화된 질서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단일주의로 인해 상대방을 배척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만 인식 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차이는 대립과 갈등의 소산일 뿐, 다양성과 풍부성을 산출하는 토대라는 인식은 없다. 또한 심의 민주주의 하에서는 다수의 시민이 단순히 지지하는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정당화되지 않으며, 민주적 결정은 정책결정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용 가능한 이유로 지지받을 때 정당화된다.

사회발전과 구성체계의 전환에 따라 인권교육은 참여적이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려되는 것이 구성주의인데 과거 수동적 학습관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던 객관주의에 반하는 개념으로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구성주의 입장에서 학습이란 학습자가 백지 상태인 채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이 지닌 경험이나 신념 체계에 따라 개념 또는 인지 구조를 재조직해 가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객관주의가 학습의 결과·산출에 관심을 둔다면, 구성주의는 학습의 내적 과정을 중시한다. 효과적인 인권교육으로써 접근법은 구성주의를 주도적으로 객관주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 4. 인권 친화적 교육 환경

한국 사회에 ‘국민’과 ‘사적시민’은 강력하게 발달해 있지만, 시민성을 갖춘 공중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인권교육을 통해 수용된 비판적인 사고능력이 실제의 삶 속에서 곧바로 인권 친화적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또한 추상적인 인권 관련 지식이 구체적인 인권 친화적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사고능력보다는 인권 친화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위성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sup>10)</sup>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사고능력만을 가

9) Portes, A.,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998, pp. 1-24.

10) 박상준, 앞의 논문(2003), 125-126쪽.

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권 친화적 행위성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인권 교육에서 행위성향의 교육이 사고의 교육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끼어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행위성향 중심의 인권교육은 실제의 상황에서 적극적·지속적으로 인권 친화적 행위를 실천하는 성향을 습득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리적 사고란 어떤 공동체가 특정한 시점에서 수용하는 일반적인 원칙들에 맞게, 즉 그 원칙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거나 적어도 그 원칙들과 부합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보편성을 이끌어내는 사고이다.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인간은 자기성취와 자기실현의 근본적이고도 보편적인 능력을 누구나 공유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철학적 가정이 인권에 대한 모든 이념과 사상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집단적 차원에서 인권이 뜻하는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 혹은 시민의 자격으로서 인간들은 그들 스스로의 결정과 선호에 따라 정통성을 지닌 정부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 또는 주권을 향유한다는 것이다. 인권교육을 좀 더 구체화하고 ‘강한 것은 항상 옳다’는 일방적인 순응의 논리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고능력과 실제의 삶에서 도덕적 행위와 인권 친화적 행위의 실천에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 필요하다.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하며, 몇몇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의무로서 부과해야 한다.

#### 5. 교육적 딜레마

##### 1) 인권교육

교육은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경영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는데, 교육에서 기업적 성격을 강조하면 갈등이 유발된다. 교육은 구조적으로 거대한 체제이고, 교육조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조직이므로 원칙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체계이다.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 교육 결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나 요구의 차이, 즉 구성원 간의 교육 의식과 교육관,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의해 긴장과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교육은 단순히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과정이라 아니라 그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므로 어떤 국면과 단계에서는 단체의 교육목적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단순한 지지자가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의 다름”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일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모범답안으로 전체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는 없다. 잘 준비된 연구보고서, 전문가를 위한 연수 자료 등은 계몽적인데다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 실천적이고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배기구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될 때, 주체와 객체가 동일하게 이미 주체를 대상화하여 계몽하고자 하는 의도로 인식되고 있는 점은 교육의 의미가 계몽적이고 교훈적이라고 예정하는 자기결정력과는 무관 것으로 설정하기가 쉽다. 새로운 인권교육은 전면적인 개혁보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인권 기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인권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수성과 힘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 2) 인권교육방법론

인권교육의 방법은 사고중심인가 혹은 행위중심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인식론적인 입장인 객관주의적 접근에서는 개인의 경험은 세계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인권교육 개념의 원리에 입각한 비판적 관점의 인권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이자 전체의 권리이며 사회적 약자의 몸부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제도화는 법적 강제나 힘에 의한 억압보다는 그 속도나 확산에 있어서 더디게 진행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우리에게 소유는 경제적 사실로 제한하는 특히 인권 문제와 는 더욱 무관한 영역이라고 취급하기 쉽다. 또한 서구 인권과 인권교육의 경로는 준거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성과 사회적 관계의 상이함을 망각하는 교육과정과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는 문화적 일원주의이다.

사회로부터 “추상화된” 사회과학적 지식의 획득이 “실제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행위의 영역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인지능력 중심 사회과 모

형들이 주장하듯이, 인권교육과정을 사회과학적 지식과 인지적 활동에만 제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추상화된 사회과학적 지식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sup>11)</sup> 또한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합리적인 원칙에 의거하여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서로 따져 본 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습관적으로 행동한다. 인지능력 중심의 사회과 모형들은 개인이 합리적 사고를 거쳐 행위를 선택한 후에 그 선택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았다. 행위는 반성적 의식의 상태에서 행위자는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그렇게 이해된 상황에서 행위의 대안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숙고할 것이다. 이런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통하여 개별 행위자는 자신이 따라야 할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sup>12)</sup>

인지능력 중심의 모형들이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한 사회적 행위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형들은 사고—행위의 일치 및 지식—실천의 일치 가정에 의거하여 주로 합리적인 사고능력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만 사회적 행위를 실천할 기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일반화의 오류다. 예를 들어 민중은 지배에 의해 일반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민중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다. 그들의 삶과 문화는 지배층과는 독자성을 확보하기도 하고, 지배문화에 각인되기도 하는 능동성과 예측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런 점에서 인지능력 중심의 사회과 모형들이 인지주의적·주지주의적 가정 속에서 주로 개인의 사고능력의 발달을 강조했다.<sup>13)</sup>

행위의 교육에서는 행위수행과 규칙 준수에 대해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상호지식 및 실천적 지식에 대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공적인 규칙에 따라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암묵적인 형태일지라도 사회적 행위와 규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반면에 사고의 교육은 행위의 교육에서 배웠던 사회

11) 박상준, 「사회과 교육의 목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행위와 사고의 통합」, 『시민교육연구』, 34(2)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2), 73쪽.

12) 위의 논문, 75쪽.

13) 위의 논문, 75쪽.



적 행위와 규칙, 그와 관련된 실천적 지식에 대해 반성하는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사고의 교육에서는 현행 사회적 행위와 규칙의 타당성 및 적합성을 평가하여 재구성하는 반성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적 행위와 규칙에 대해 반성하는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기본적 가치와 일반적 원칙 그리고 그것들을 기초로 현재의 사회적 행위와 규칙을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사고활동을 가르쳐야 한다.<sup>14)</sup> 개인의 사고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이 실제의 인권옹호 행위로 연결되는 고리는 매우 복잡하다. 두 요소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비판적인 사고가 실제의 상황에서 인권옹호 행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고 이외에 다른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개인의 사고가 구체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상황, 집단 규범, 문화적 풍토, 개인적인 신념과 의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교육은 지식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렇게 가르쳐진 지식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고 본래의 목적에 역행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지식을 통해 획득된 힘이 오히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간 능력의 발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sup>15)</sup> 이런 사례들은 교육이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지식과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행위성향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물론 그 프로그램들이 비판적인 사고에 의거한 인권옹호 행위의 실천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6. 인권교육의 주체와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그 의미에 대한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을 침해당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대처할 권능을 갖지 못하는 집단과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지해야 한다. 즉 학생과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들에게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14) 위의 논문, 82쪽.

15) 손봉호, 『한국사회의 가치관: 무엇이 문제인가, 정해창(외), 『가치관의 변동과 도덕성 회복』(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138쪽.

권리에 대한 인식이 직업상이든 지위상이든 간에 그들의 직무상의 행위가 인권을 침해하고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과 계층에게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의 대상은 모든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선출 및 임명직 공무원과 기업 및 은행의 간부, 지주, 전통사회와 종교 지도자 등 그 사람의 결정과 정책이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경우이다. 대상 집단에는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의학 전문가, 언론인, 변호사, 검사, 판사, 법집행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인권을 이해하고 지지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시민의 이해에 맞게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권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약자의 위치를 공감하며 그들이 지휘, 지도, 감독하는 대상에 대해 부지불식간에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인권교육의 목표는 실지로 이들로 하여금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될 것이며, 인권관련법에 대한 이해, 인권 보호의 기제, 그리고 인권취약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술들이 인권교육의 핵심 내용이 된다.<sup>16)</sup>

인권교육의 대상은 다양하다. 이들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집단, 인권을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집단, 인권을 침해받기 쉬운 집단 등. 그런데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속한 사람도 또 다른 관계에서 보면 소수자이다. 인권교육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인권역량을 키움으로써 스스로 인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인권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할 때, 그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인식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도 길러질 수 있다.

## IV. 인권교육의 실천방향 모색

### 1. 인권교육 재정립의 당위성

인권과 인권교육의 개념과 실천은 간단명료한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갖는 복잡성과 다원성을 고려한다면 인권과 교육에 대한 개념과 실천은 변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인권교육을 새롭게 재정립하고자 할 때, 그러한 인권교

16) 한국교육연구소, 앞의 논문, 101쪽.

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은 첫째, 인권교육은 개인의 권리이다. 인권교육을 통해 개인의 인권 역량이 향상되면 사회참여 능력이 증대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인권교육은 사회 내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을 키우고 그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 학습자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며 참여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의 관점과 공동체 전체를 보는 사회구조적 조망과 더불어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up>17)</sup>

이처럼 새롭게 재인식된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경험에서 시작해야 한다든가, 참여적 방법을 써야 한다든가, 개인이 삶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비판의식을 길러 사회의 변혁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교육의 핵심적 특성이다. 인권교육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학습자들에게 인권이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포함해야 하는 학습이 구체적 삶의 현장에 관련되지 못하고 ‘학습’을 위한 ‘학습’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존에서부터 전승해온 문제에 새롭게 다뤄야 할 환경과괴, 세대갈등,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갈등 등 같은 사회 문제들은 모두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또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지적인 사회 행위자들을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인권교육 재정립의 방향

### 1) 인성교육으로서의 인권

인권교육은 비판적 성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보고 듣고 행동해 오던 사회 현상이나 일상생활들을 인권의 눈으로 다시 한 번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관습, 관행, 안정, 질서 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오던 제도와 문화를 인권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인권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권침해 상황을 민감하게 발견해낼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개발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sup>18)</sup>

17) 위의 논문, 94쪽.

18) 위의 논문, 36쪽.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인 인권은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가치라는 점에서 인권은 보편적이면서 특수성이 반영된다.

타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의 주인이 된다는 점에서 비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이상인 서양적 자유의 이념 속에 타자적 주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홀로 주체성의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이 한 가지 과제였다면, 우리 한국인이 경험한 타자에 의한 자기상실과 자기분열의 역사로부터 타자와의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내고 서양정신이 가르쳐주지 않은 우리 나름의 주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과제이다.<sup>19)</sup>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은 어느 특정한 의미만을, 어느 특정한 용도만을, 그리고 어느 특정한 지식의 형식만을 편향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식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형식지라고 해도 이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은 암묵지를 형성시키지 못한다면 정말 무의미할 뿐 아니라 이런 교육은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인권교육은 여분의 시간에 흥밋거리나 동정심의 발로로 접근하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준비와 적절한 대응책을 내면화시켜 소유하는 것이다.

### 2) 시민교육으로서의 인권

시민의 범주는 인권적 측면에서 조명하는 재산과 학식이나 종교와 인종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간다운 삶과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만큼 학습자와 교육자를 포함하는 전체 교육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지를 고려한 교육적 시민운동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즉 시민사회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체를 제작해가는 시민성을 확보해가는 것이다. 시민성이라 함은 ‘근대적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협애하고 이기적 특수이익에의 경도를 자제하고, 공동의 이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와 특유의 심리적 준비상태’를 의미한다. 개인의 인권적 가치를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특정한 인간관계와 삶의 형태를 염두에 둔 시민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민주시민교육은 다수의 의사소통과 절차의 합리성을 강조하기에 인권교육이 갖는 접근과는 상이한 입장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이 어떤 행위자의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손실이 치명적이라면 그 이

19) 김상봉, 『서로주체성의 이념』(길, 2007), 22쪽.

익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요구되고 필요한 것은 시민이 개체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원리를 깨우치는 것이다. 보편적인 인간 혹은 자율적 개인은 공동체에 우선하거나 공동체와 분리될 개연성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다. 즉 자의로든 타의로든 인간은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보편적인 인간도 공동체와 분리될 경우, 인간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자율적 개인도 공동체를 떠날 경우에는 생존을 위협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동체를 초월하거나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이나 개인을 상정할 수 있다.<sup>20)</sup> 그러나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동체와 분리된 사람을 인간이나 개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공동체(국가나 사회)와 분리된 사람을 시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다. 시민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으로, 공동체와의 관계 혹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부여된 어떤 지위(권리)와 역할(의무)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sup>21)</sup> 개인이 누리는 자유는 그 자체를 가지 있는 것으로 존중해주는 문화공동체 내에서만이 의미가 있고 언제나 공동체를 전제한 자유이다. 즉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권리로써 존중해주는 공동체 내에서만이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권리로써 존재할 수가 있다. 근대 시민 개념은 민주 국가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이자 시장 경제에서 합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경쟁하는 동시에 생존 혹은 평등을 보장받는 주체로 그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시민은 공동체 혹은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할 수 있고, 그 공동체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공동체들이다.

### 3. 인권교육 실천방향의 조건과 한계

#### 1) 인식의 틀

동일성의 지형에 익숙해지면 이론적인 강요, 즉 다수성과 차이를 통일성과 동일성 안에서 제거하라는 요구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중성 또한 통일성을 거쳐서 사유될 수 있어야 한다.<sup>22)</sup>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차별하지 않는

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차이 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등을 모든 존재에 대하여 절대화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합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결국 법적으로도 불공평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간이 본질의 차이에 따라 불공평한 취급을 승인할 경우에는 법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제3세대 인권인 ‘연대하는 개인’을 기초로 정리되는 인권론은 신자유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거대기업, 사적 소유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세계인권선언> 틀 안에서 진행된 인권논쟁과 딜레마에 상당한 정도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대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인권운동은 이 주체의 권리를 규정해주어야 한다. 공공성의 결여와 실천이 부족한 사회는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규범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이성과 책임에 근거한 공동체보다는 적자생존의 경쟁 하에서 자기보존의 욕구가 강하면 이기주의적 천민성이 지배하게 된다.

인권교육은 실천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사회적 행위의 실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단지 사회현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작업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실천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훌륭한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회적 행위와 규칙을 경험하고 습관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한 사회과학적 지식 습득보다는 사회적 행위 및 규칙과 관련된 실천적 지식을 가르치고, 비판적 태도를 통해 새로운 행위방식이나 규칙을 재구성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르쳐야 한다. 아직도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주의와 자학사관에 의한 사회현상과 현재성을 확인하는 인식의 대상과 방법이 지극히 부정적인 접근일 수밖에 없는 서구적인 근대성을 실현하려는 노력과 기독교적인 인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것에는 우리와 제도적 문화적 특성과 접합되는 진정성을 드러내는 미래사회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한국사회의 문제는 서구적인 기구와 제도를 이식시키는데 완벽하게 실패한 엘리트와 리더들인데 이들의 인식은 전혀 현실과는 상관없는 미국적이거나 서구적인 제도의 도입과 이를 실천하

20) 강대현, 「사회과교육 목표로서의 시민 개념에 대한 분석」, 『사회과교육』, 46(1)(2007), 87쪽.

21) 위의 논문, 87쪽.

22) Maihofer, A., Ansätze zur Kritik des moralischen Universalismus. Zur moraltheoretischen Diskussion um Gilligans Thesen einer "weiblichen" Moralauffassung. *Feministische Studien*, 6, 1988, S. 48, pp. 32-52.

기 위한 연구방법과 방법론적인 성찰이 아니라 외삽형·몰입형 실천방식이었다.

## 2) 다문화주의와 문화민주주의

문화는 사회의 특정계층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문화의 민주화로 표현되는데 문화와 문화적 감상·참여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급문화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확보했다면 이는 자본의 지배로 인해 그 목적달성이 제한되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문화민주주의이다. 문화민주주의의 실천은 곧 문화의 평등성을 의미한다. 문화민주주의의 개념은 창의성의 표현,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기결정권, 지속적인 교육, 지역사회 개발, 범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위한 제반여건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일컬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의 문화정책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다양한 취향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이런 면에서 ‘모두를 위한 문화’가 아닌 ‘모두에 의한 문화’ 환경을 작성하려는 문화운동은 ‘문화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며, 정부의 문화정책 영역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다문화주의는 같은 사회 공간 내에서 복수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정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란 문화적 현상을 포착하고 있는 정태적·수동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문화 현상을 주도할 수 있는 동태적·능동적 개념으로 국가를 비롯한 사회 관리자의 힘이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의 격차와 이질성으로 무시되거나 차별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sup>23)</sup> 문화를 어떤 사회집단의 삶의 총체라고 정의한다면 다문화주의에서는 인종적·민족적·문화적 차별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형태의 다문화주의이든 간에 문화와 정체성의 특수성을 지닌 개인들에게 권리를 인정한다. 다문화주의가 주장하는 개인의 권리 인정이 곧 인권의 한 측면을 이룬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상이한 문화 또는 상이한 하부문화에 대한 공적 인정과 관용으로 ‘차이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 ‘인정의 정치’를 담아야 한다.

## 3) 정치경제적 조건변화의 수용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에서, 민주주의를 확장하여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가 가능한 형식화되면서 자본주의가 내장하는 불평등이 소멸되지 않은 채로 공존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나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인간은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능하는 단순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시장에 의해 삶의 자율을 저해하면 서까지 생산과 소비의 무한한 팽창을 조장할 때, 인간은 스스로 어떤 자치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화되어진다. 자율과 자치의 대가로 얻는 물질적 풍요는 어떤 것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 즉 영원한 부자유 말고는 다른 어떤 행복도, 심지어는 사유의 행복도 알지 못한다. 삶의 자율은 소비나 노동생산성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가치질서이다. 신자유주의가 문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작동불능의 상태로 전환되는데도 정치지배층은 인간주의에 대한 배려를 할 의도가 없다. 그래서 시장화와 민주화가 공적 삶을 개인과 집단들이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전체주의보다 더욱 강한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는 공적영역의 존재 없이 사적 영역은 존재할 수 없고, 사적 영역은 공적영역의 범위 내에서만 존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이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공적영역을 축소·파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공적영역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은 사적영역이 자신의 존재기반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적영역이 더 이상 사적 영역의 확대를 지지할 수 없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 아니라 공적영역의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축소·파괴는 사적영역의 팽창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sup>24)</sup> 공적영역의 축소와 파괴는 사적영역의 팽창에 반비례한다. 사적 영역의 팽창이 반복될수록 개인화되어 도덕자원과 규범에 무관심해지고, 사적영역이 팽창될수록 자연자원과 자연의 자정능력은 고갈된다. 도구적 이성만이 인간이 갖는 최종적인 삶의 목적은 아니라면 민주화 이후에 왜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과 이탈이 강화되고 시장화만이 잔존하는가? 그리고 대의제만 잔존하고 민주주의는 사라진 지금을 타개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과 사회적 자본주

23) 구건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27(3)(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3), 30쪽.

24) 이흥균, 「사적 영역의 팽창에 의한 공적 영역의 파괴」, 『현상과 인식』, 통권99호(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6), 99쪽.

의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 4) 인권영향평가제

인권의 실천과 이행에 대한 자율규제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에 있는 의미 있는 장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조치가 제한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들 수 있다. 효과적인 실천대안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과 사회적 신뢰관계를 높일 수 있다. 평가에서는 평가기준과 측정값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평가기준이란 그들의 판단을 반영시키고자 노력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고, 측정값은 이 기준에 들어맞는 지를 파악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인권영향평가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사전 통보 조항을 확대한 제도로 볼 수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은 인권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정책·사업을 입안할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인권영향평가제를 작성해 인권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과, ‘해당 기관이 인권영향평가서를 내지 않거나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어겼을 경우 제도·정책·사업 등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제도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조화와 능력강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위임민주주의에 의한 대의제도의 변형과 변질에 대한 인권기관의 실질적인 행위가 인권침해와 유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제도이다. 또한 국제인권기구나 문헌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따르는 강제적인 조치를 기업과 정부에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사전과 사후에 준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권은 특정인과 집단의 권리가 아니라면 법규범화를 통해서 이를 개인과 공공집단, 민간영역의 준수여부를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다.

#### 5) 인권교육위원회

전 사회적 인권교육을 전담할 기구의 설치에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이상을 담아야 한다. 인권교육기관의 설치가 선후적인 조치보다 효과적인 선행적인 인권보호와 실천이라는 함의를 갖는다는 동의구조 하에서 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후에 이를 전담할 교육기관의 제도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개발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라면 이를 실천하고 인권을 기초 소양으로서의 의식 진보를 위해서 인권교육을 조직화하고 이를 확대·강화하기 위해서 또한 사회문제를 선정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책임 있는 인권교육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sup>25)</sup> 여기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부관료, 민간단체, 인권교육전문가, 민간영역(경제사회)의 대표와 교육자를 포함하는 인권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미하며 명시할 《인권교육법》의 제정과 적용을 전제한다. 전체 구성원의 삶의 질에 관한 논의를 국회와 정부만의 정책조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과정이다. 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교육과정과 비용, 기타의 문제 해결에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정부 부처의 산하기구로 설치한다면 집권층의 정치적 의사가 너무나 쉽게 반영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권교육의 입안이나 추진 등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권교육기관은 설치 및 운영에 몇 가지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가치교육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바람직한 사회관계와 사회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와 태도를 교육시킨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인권인식과 권리교육을 통한 인성 습득의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에 관한 조사연구와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구성된 전체가 인권교육체계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인권교육기관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실천할 인권교육전문가를 지역과 영역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인권교육의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는 인권교육 지원 및 평가

25) 이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8월 국회에 인권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정부안을 제출하였고, 국회에서는 2007년 8월 28일 정상호 의원을 비롯한 12명이 <인권교육진흥법안>을 제출하였다.

를 수행할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sup>26)</sup>

인권과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인간을 위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인권의식과 인권태도를 함양하고, 내 삶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며, 타자의 공간을 승인하고 어울리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세상은 인간과 시장 중심적이지 않는 시장 자율보다는 시장에 대한 공적·정치적 규율, 국가주의적인 군사안보가 아니라 인간안보, 경제정책에 의한 사회정책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에 의한 경제정책의 조정,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 인간주의에 의한 원리와 원칙을 토대로 시민사회적 가치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초국경적 차원의 사회적 규율질서를 형성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 V. 결론

지금까지 이 본문은 한국에서 인권과 인권교육체계가 갖는 한계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강한 사회와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인권교육의 인식과 가치의 전환을 위한 모색을 하였다. 한국사회의 위기는 주기적으로 다가온다. 그 위기의 근저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과 정체성, 그리고 자율성의 심각한 결여에서 출현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의 연계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사회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다원성, 차이성의 존중이 최대한 보장되면서도 그것이 심각한 갈등적·대립적 사태로 전화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비로소 다양한 개인 간 집단적 차이점과 다름, 고유한 가치가 보존되고 존중될 수 있다. 질차적 정당성으로서의 보편성이 확립된 상태에서 비로소 다원성과 차이성의 존립 및 존중 또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원주의는 그 선결 조건으로서 보편주의적 원칙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보편성의 토대 위에서 사회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에 기여

하는 진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삶의 전영역이 지구촌의 영향권에 있다. 그러므로 한 국가에 적용되는 도덕의 개념을 확장하여 세계를 포괄하는 윤리가 필요하다. 인권은 나를 인류 속의 관계적 존재로 파악할 때, 인류를 위해 실천하게 된다. 인권능력은 개인의 권리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권리의식이 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세계로부터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받는 자세는 물론 개인이 타자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시민을 위한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내용은,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간접적인 자료제시를 통해 교육을 실시해 왔다. 물론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예측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실천력을 요구하는 인권교육의 특성과 연결해 보면 생명이 없는 교육방법이다.

인권능력은 학습자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보편적인 인간다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식과 국가주의를 위한 가치주의의 의무와 책임을 위한 제한적 권리로서의 인권이 아닌 변화된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은 재정립되어야 한다. 권력과 능력에 의한 인권인식이 아닌 인간 본래의 권능이라는 차원에서 다문화와 문화민주주의의 토대 하에서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작업으로 기업, 가정과 학교에서 인권교육은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안으로는 잠재적 유보상태에 있는 인권교육법의 실천을 기반으로, 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정과 학교, 시민교육의 다차원적인 제도화에서 특성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권교육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결국은 인권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인권옹호적인 환경 속에서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인권지향적인 행동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표출되도록 경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인권교육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26) 송현정, 「한국 인권교육 현황과 인권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 『유럽·미국의 인권교육 실천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 인권교육 국제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2006;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2006년 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을 참조.

참고문헌

강대현, 「사회과교육 목표로서의 시민 개념에 대한 분석」, 『사회과교육』 46(1), 한국인문사회학회, 2007, 83~105쪽.

구건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27(3), 2003, 29~53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개념 및 방향정립 모색 연구”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6.

김상봉, 『서로주체성의 이념』, 서울: 길, 2007.

박상준, 「사회과 교육의 목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행위와 사고의 통합」, 『시민교육연구』 34(2),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2, 65~98쪽.

박상준,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35(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3, 115~141쪽.

박상준, 「행위성향증식의 시민교육」,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

손봉호, 「한국사회의 가치관: 무엇이 문제인가」, 정해창(외), 『가치관의 변동과 도덕성 회복』,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송현정, 「한국 인권교육 현황과 인권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 『유럽·미국의 인권교육 실천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 인권교육 국제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2006.

유네스코한국위원회(편),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오름, 1997.

이명준(외),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이재호, 「동북아시아 인권담론: 보편인권과 특수인권, 그리고 동북아인권체제를 위하여」, 『한국동북아논총』 12(3), 2007, 55~81쪽.

이홍균, 「사적 영역의 팽창에 의한 공적 영역의 파괴」, 『현상과 인식』 30(3), 2006, 80~101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민간단체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2000.

한국교육연구소,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2005년도 인권교육개념모색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5.

Dandan, Virginia B., 「인권교육에 대한 대안적 접근」, <http://www.rights.or.kr/html/rights040001.html?num=121&new>

Maihofer, A., “Ansätze zur Kritik des moralischen Universalismus. Zur moraltheoretischen Diskussion um Gilligans Thesen.” *Feministische Studien: Radikalität und Differenz*, 6,

1988, pp. 32~52.

Lister, I., “Educating beyond the n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1(1/2), 1995, pp. 109~118.

Portes, A.,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998, pp. 1~24.

국문 요약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대한 보편적 열망에 입각하여 인간이 갖는 권능을 가르치며, 주변의 반인권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들과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인 전망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하는 총체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시킴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존과 소통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확보하며 공적시민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인권과 인권교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인권교육체계와 프로그램이 지닌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공식교육 이외는 체계화되지 않은 교육적 체계의 박약함과 물질정향과 지배적 가치의 일원성에 나타난 한계를 극복할 인권교육의 실천 방안에 대한 대안을 탐색했다. 인권교육의 방법론으로는 참여와 인지에 관련된 인지 능력과 행위지향을 통한 접근을 제시했다.

● 투고일 : 2008. 7. 14.

● 심사완료일 : 2008. 8. 28.

● 주제어(keyword) : 인권(human rights),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 인지정향(cognitive-oriented), 행위지향(action-disposition), 인권교육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Education).